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37
----------	-------

발의연월일 : 2025. 7. 22.

발 의 자 : 위성곤 · 김기표 · 이학영
이건태 · 이재관 · 박지혜
서영교 · 임오경 · 주철현
허영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조사(2019)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34.2%에 이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는 48.8%이며, 피해자의 가족(32.6%)과 그 지인(30.2%)의 경우에도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가족 관계에서도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 범위는 직장동료·지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호 하목(중전의 파목) 중 “타목까지의”를 “파목까지의”로
한다.

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의
죄

제5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가정폭력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
조(스토킹범죄)의 죄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

제29조제1항제1호 중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를 “피해자, 가정구
성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를 “피해자, 가정구성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자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를 “피해
자, 가정구성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자에”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을 “피해자, 가정구성
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타. (생략) <u><신설></u>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 8. (생략)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의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의 죄 하. -----파목까지의----- ----- 4. ~ 8. (현행과 같음)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가정폭력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의

2. ~ 5. (생략)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u>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u>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 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u>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u>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 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u>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u>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 6. (생략) ② ~ ⑫ (생략)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생략) ② <u>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u>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u>죄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u> <u>은 법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u> 2. ~ 5.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시조치) ① ----- ----- ----- ----- ----- -----. 1. <u>피해자, 가정구성원 또는 피</u> <u>해자가 지정한 자의</u>----- ----- 2. <u>피해자, 가정구성원 또는 피</u> <u>해자가 지정한 자나</u>----- ----- 3. <u>피해자, 가정구성원 또는 피</u> <u>해자가 지정한 자에</u>----- ----- -----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피해자, 가정구성원 또는 피</u> <u>해자가 지정한 자는</u>-----
--	---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 ----- -----.
---	--